

울산지방법원 2021. 10. 26 선고 2018가단56789 판결 [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인

변 론 종 결 2021. 9. 28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06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3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3. 10. 9.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661.16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를 106,0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2013. 11. 7.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.

나.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커피 박물관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, 위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입구에 커피 박물관을 건축할 예정이고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.

다. D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 106,000,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. 1. 28.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(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968).

라. 원고는 2018. 1. 25.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,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대표이사 D의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06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3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,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형석